

공간정보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정합성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on Coherence of Legal System for Systematic Development of Spatial Information

김현희* · 임형택**

Kim, Hyun-Hee · Lim, Hyung-Taek

초록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정책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등을 근거로 제도화 되었으며, 이들은 2015년 6월 새로운 이름과 내용으로 시행된다. 공간정보의 개념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간정보법이 타법과의 관계에서 체계적으로 정합을 이루며 발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공간정보 개념의 유형화, 공간정보 관련법제의 체계화, 공간정보 추진체계의 전문화에 대하여 현행 법률을 검토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근거로는 공간정보에 관하여 우리보다 일찍 발전을 이룬 독일, 프랑스, 미국의 입법례와 정책사례를 참고하였다.

• **주요어** : 공간정보, 기본공간정보,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 추진체계

ABSTRACT

Korea's Spatial Information Policy has been institutionalized based by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ct」, 「Act on Land Survey, Waterway Survey and Cadastral Records」, 「Spatial Data Industry Promotion Act」. In year 2015, These acts were modified with new names and contents. It is critical that the definition of spatial information ought to be generalized. In addition, it is of paramount importance to review factors those contribute to the systematic development on coherent relation between Spatial Information Act and other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전자우편: k-hyunh@klri.re.kr), 주저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법학박사(전자우편: nananarada@lx.or.kr), 교신저자

acts. Examples of improvement area may include: Categorization of Spatial Information Concept, Systematization of Spatial Data Related Legislation, and Enhancement of Organization Specializing in Spatial Information. Furthermore, Legislation & Policy case of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were used as a basis for improvement.

• **KEYWORDS** : Spatial Information Policy, Basic Spatial Informatio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ct, Spatial Data Execution System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모든 행위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도로정보에 건물정보를 융·복합할 수 있으며, 이들 정보에 유동인구정보 등 관련 정보를 추가하면 다양한 상권분석이 가능해진다. 또한, 도로, 하천, 산림, 지하시설, 건물 등에 대한 이용현황 정보를 정확히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둔다면 국토이용, 환경보호, 재난 및 재해대책 기타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이렇듯 단순한 위치정보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융·복합할 수 있는 공간정보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무한하게 창출하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¹⁾

우리나라의 국가공간정보정책은 현재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2017)」²⁾에 근거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한 관리기관 간 공유·협

력, 공간 빅데이터 체계 등을 통해 공간정보기반 정부3.0과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가 구축되어 국토부, 안행부, 경찰청 등 25개 기관의 76개 정보시스템이 통합·연계되어 있으며, 택지정보, 새 주소정보 등 총 42종 800여개의 공간정보가 공유되고 있다.³⁾

이러한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다수의 법률이 존재한다. 공간정보에 관한 주요 법제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구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등이 직접적인 근거로서 역할하고 있으며,⁴⁾ 그 밖에 「국가정보화기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이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들 법제는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체계와 역할이 고유하게 정해져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적용영역에서 큰 문제를 발생하지

1) 국토교통부(2013), 「2013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 pp.3~4.

2) 각 사업은 기반구축을 위한 제1차 국가GIS구축사업(1995~2000), 활용확산을 위한 「제2차 국가GIS구축사업(2001~2005)」, 기술연계를 위한 「제3차 국가GIS구축사업(2006~2009)」, 연계·통합을 위한 「제4차 국가GIS구축사업(2010~2015)」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3) 국토교통부(2013) 전계서, p.14.

4) 소위 공간3법이라 불리는 이들은 2014년 6월 3일 개정되어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 및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법제의 영역에 있어서는 공간정보의 수집 및 구축에 관하여 일부 정합성이 부족한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각종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정확한 정보제공에 대한 산업과 민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국토공간의 실제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며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반영하도록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에 관한 규범은 「국토기본법」 등 약 130여개의 개별법과 그 하위법령으로 이루어져 있어,⁵⁾ 조사체계와 조사기관, 조사방법, 갱신주기 기타 공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하여 자료가 중복되고, 일관성 및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다. 또한 개별법상의 국토이용현황 조사를 토대로 한 자료의 관리 및 정보구축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행정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⁶⁾

그리하여 2015년 6월 새로운 명칭과 조직체제로 시행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공간정보법)이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2014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

구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중에서 논의되었던 일부 쟁점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위 보고서는 독일, 프랑스, 미국 등 공간정보 개념의 발전과 관련 규범, 추진체계 등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그것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간정보는 각 국가의 기술발전 정도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각 국가의 상황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기술적인 사항을 전제조건한 정책분야 보다는 규범과 관련 조직, 즉 추진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의 공간정보법이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시사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법 연구를 시도하였다. <표 1>은 비교법 연구의 대상이었던 독일, 프랑스, 미국의 공간정보와 관련된 현황으로서 이 연구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을 위주로 재구성한 것이다.

2. 공간정보의 개념과 유형화

2.1. 현황

“공간정보”라 함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공간정보법 제2조제1호). 법에서 정하는 공간정보라는 개념

5) 최종권(2014), 「우리나라의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에 관한 법·제도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pp. 117-118. 및 부록(국토이용현황 조사에 관한 우리나라 법령 일람표) 참조.

6) 임형택(2014), 「공간정보 법제 개선 연구」, 「LXSIRI Report 제7호,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p.15.; 정동훈 등(2013), 국토공간 이용현황 정보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정보학회지 제21권 제5호, p. 26.; 조광제(2013), 「국토조사에 관한 법체계의 고찰」, 지적 제43권 1호, p.179., p.185.

〈표 1〉 국가공간정보의 조사 및 구축에 관한 비교표

항목	독일	프랑스	미국	
기초적 개념	- 지리정보 (Geodaten)	- 지리정보 (Information géographique)	- 국가공간정보기반(NSDI)	
기본법	- EU의 2007/2지침 - 공간정서법(ROG)	- EU의 2007/2지침 - 환경법전	-	
공간정보 관련 법령	- 디지털공간정보법(GeoZG) - 각 주의 측량법	- 통합환경법전(법률 및 시행령) - 지적 관련법령	- 관리예산처회람(OMB Circular A-16) - 대통령령(EO) 제12906호(공간 정보 획득 및 접근 조정)	
기본 공간정보 목록	- 지적정보 - 지형정보 - 측지기준점정보	- 지리좌표 - 중력 - 고도	- 소유권 - 교통 - 지표수 - 경계 - 측지기준점 - 고도	
전문 공간정보	- 지형명칭, 행정단위, 주소, 토지, 교통망, 해양망, 보호영역 등	- 농업, 생태, 기후, 재난관리, 수로, 교육, 에너지, 산림 등	- 학교, 토양, 하수도, 수로, 지표, 홍수지역 등	
포털사이트	geoportal.de	geoportail.gouv.fr	geoplatform.gov	
추진 체계 - 정보 취득 주체	기본 공간 정보	- 연방주지도측량청(BKG) - 지리정보기반위원회(GDI-DE) - 측량소관청연합회(ADV)	- 지속가능발전부(MEDDE) - 국가지리정보위원회(CNIG) - 국립지리정보산림연구소(IGN)	- 내무부 지리조사국(USGS) - 연방지리정보위원회(FGDC)
	전문 공간 정보	- 각 전문영역별 관할기관 - 민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 민간	-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 민간

출처: 김현희 등(2014),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pp. 289-291.을 수정·보완

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종류나 유형에 관하여 언급이 없어서 선뜻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공간정보법은 지형·해안선·행정 경계·도로 또는 철도의 경계·하천경계·지적,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법 제19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로서 기준점, 지명, 정사영상, 수치지표고 모형, 공간정보 입체 모형, 실내공간정보 등(시행령 제15조)을 “기본공간정보”라고 하여 공간정보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목록은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하므로 제한적 열거가 아닌 예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본공간정보는 모든 공간정보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서 국가공간정보정책의 토대를 이루며 공간정보 관련 기술과 산업영역에서 표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본공간정보에 관하여 예시적인 목록이 아닌 명확한 개념과 선정요건 등에 관하여는 표준화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그 범위와 유형 등도 행정주체인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가능한 한 법령을 통해 목록을 정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본공간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면 기본공간정보로서의 고유한 역할 및 기능의 확보가 어렵게 되어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반대로 기본공간정보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고 표준이 되어야 할 공간정보의 핵심요소가 개별적인 관리주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행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공간정보의 개념이나 그 목록의 규정방식과 다른 유형의 공간정보에 관하여 외국의 입법례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2.2. 외국의 사례

“공간정보”(spatial data)라는 용어는 미국과 유럽에서 약간 다른 관점에서 발전해왔다. 즉, 미국의 경우 기존의 측량 및 지도제작과 관련하여 공간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노력과 비용의 중복과 낭비를 방지하고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공간정보 규범이 마련되고 발전되었다.⁷⁾ 이와 비교하여 유럽의 경우는 환경보호의 수단과 정책을 정함에 있어서 회원국들이 각자가 보유한 공간정보에 상호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하여 유럽 연합 차원의 지침을 만들고 그 요소가 되는 공간정보체계 및 시스템을 각국이 호환 공유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전하였다. 때문에 그 용어에 있어서도 공간정보 보다 “지리정

보”(Geodaten, Information géographique)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발전되어 왔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공간정보도 미국에서와 같이 이미 오래전부터 독립적으로 영역을 구축하여 온 지적, 측지 등 기존의 측량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물론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은 「디지털공간정보법」(GeoZG)에서 지적, 지형, 측지기준에 관한 정보를 기본공간정보(fachneutralen Kernkomponenten)로 규정하고(제5조), 이러한 공간정보와 관련이 있는 행정단위, 주소, 필지, 교통, 시설물, 자원 등의 구체적인 테마들(Themen)을 매우 자세하게 정하고 있다.⁸⁾

프랑스의 「통합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각각 자신의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거나 필요한 경우 다른 공법인 혹은 사인이 보유하는 필지구분 및 필지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L.127-10조),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배포될 수 있는 정보로서 지적 필지의 근거, 필지의 위치 등에 관한 지리적 위치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정하고 있다(제R.127-10조).

미국의 경우도 국가공간정보기반(NSDI)의 구성요소는 기본공간정보(framework data)와 전문공간정보(thematic data)로 이루어지는데, 전자의 공간정보에는 소유권, 교통, 지표수, 경계, 측지기준점, 고도, 항공영상 등이 포함되고, 후자

7) P. Folger(2012), 「Issues and Challenges for Federal Geospatial Informat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를 최진무(2014), 「Introduction to FGDC and Geospatial Data Management in the US」,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 p.46.에서 재인용.

8) 동법 제4조제1항제4호에는 공간정보와 관련이 있는(betreffen) 33개 주제(테마)의 목록과 성격 등이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에는 학교, 토양, 하수도, 수로, 지표, 인구밀집지역, 홍수지역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기본공간정보는 다른 주제들을 편집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기본공간정보와 전문공간정보를 구별하는 의미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국은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와 “전문공간정보”로 구별함을 전제로 기본공간정보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이러한 기본공간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공간정보를 조사하고 구축하도록 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본공간정보의 상세한 구성에 있어서는 독일(지적정보, 지형정보, 측지기준점), 프랑스(지리좌표, 중력 및 고도), 미국(측지기준점, 경계, 고도 등)의 경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공간정보에 관한 한 가장 기본적이고 통일적 적용이 우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기본공간정보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3. 시사점

법에서 정하는 모든 공간정보가 동일한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거나 필요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즉, 지형·지적·경계 등과 같은 공간정보와 건물·시설물·주민의 분포·수목의 분포·광물자원의 매장 등과 같은 공간정보는 그 역할이나 필요성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공간정보는 토지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지표의 구획 및 표고 등을 결정하는 매우 기초적인 정보에 해

당한다. 하지만 후자의 공간정보는 전자의 공간정보를 가지고 또는 기반으로 하여 그 위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덧입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듯 공간정보의 구축이나 이·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전체 공간정보의 범주에서 공간정보의 속성에 따라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구분은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와 혹은 전문(주제별)공간정보를 구별하여 체계를 정립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이렇게 기본공간정보와 전문(주제별)공간정보의 구별 필요성에 관한 논의의 실익은 그들의 기능 또는 역할의 차이에 있다. 즉, 기본공간정보는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그것을 생산하는 기관의 공신력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수의 기관에 의하기 보다는 어느 하나의 기관이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⁹⁾ 또한 상호호환을 위해서 규격화되고 통일적이어야 하므로 기본공간정보의 사용에 어느 정도 의무적인 성격이 부여될 수도 있다. 반면에, 전문(주제별)공간정보의 경우 기본공간정보를 토대로 하여 개별 관리기관이 고유한 업무성격이나 목적,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차별화되어 생산되고 활용될 수 있다.

요컨대, 현행 공간정보법은 공간정보의 일반적 정의와 기본공간정보의 개별적 정의를 제2조와 제19조에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적어

9) 공간정보법상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지리정보원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라 할 수 있다. 기본공간정보의 생산과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에 관한 기본업무를 수행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교통부(2013), p.18의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참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상의 기본공간정보의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국토지리정보원간의 업무 조정에 관하여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 일반적 정의규정에서 기본공간정보와 전문공간정보의 개념과 최소한의 유형을 제시하여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

3. 공간정보 관련법제의 체계화

3.1. 현황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정책은 크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공간정보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을 통하여 제도화되었다. 이 중에서 “공간정보”라는 개념을 법제에 적극 도입하여 전체적인 체계를 잡은 법이 공간정보법이다.

1995년 정보기술의 발달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GIS구축사업)이 추진되었을 때만 해도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에 이러한 사업을 법적·제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구)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공간정보’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전반적으로 부족하였다. 2009년 2월에 이르러서야 공간정보법이 제정되면서 공간정보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이렇게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통합적인 법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토공간의 이용현황에 대한 조사 및 정보구축은 여전히 종래 개별 행정청의 주도로 별도의 개별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하여지고 있음을 강조

할 필요가 있다. 즉 국토공간의 이용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개별 법령은 약 130여 건에 이르며, 일부 법령은 그것을 조례¹⁰⁾에까지 위임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 의한 각종 조사 및 정보구축은 “그 법에서” 정한 고유의 입법목적의 달성 또는 개별 행정행위의 결정을 위한 근거로서 행하여진다. 예컨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정보를 제작하고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제25조), 국토계획법상의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제13조), 국유재산법상의 “실태조사”는 국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제66조) 각각 행하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공간정보법은 자신과 개별법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체계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 그 관계와 의미를 가늠해 볼 수밖에 없다. 우선, 개별법에 근거하여 본래적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국토의 이용조사 및 정보구축은 공간정보법상의 기본적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간정보법과 개별법의 관계는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개별 법령은 일정한 목적이 추가로 부여된 주제별 내지 전문적 공간정보와 관련되어 있고, 공간정보법은 이러한 전문적 공간정보에 제공되기 위한 기본적인 공간정보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간정보법은 공간정보의 수집·저장·가공·분석·표시 등을 주

10) 예컨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참조.

된 목적으로 함으로서 보다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각 개별법들은 자신의 입법목적에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제별 내지 전문공간정보를 조사·구축·가공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두 법제 간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정보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을 통해 밝히고 있는 바는 단지 법 적용의 우선순위만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130여 건의 개별 법령이 각자 그 법령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법제와 같은 상황에서 공간정보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의미는 당연히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과 같은 공간정보의 조사 및 구축에 관한 2원적 법체계는 자칫 중복투자나 전문성 결여, 정보의 신뢰성 부족, 정보의 통일적 관리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법체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3.2. 외국의 사례

유럽연합은 환경정책과 환경적 조치 및 그 밖의 환경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이 보유한 공간정보를 상호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공간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2007/2지

침, 소위 INSPIRE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주요 회원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지침에 따라 국내법으로 이행하였는데 서로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독일은 독립된 개별 법률로서 연방의 경우 「디지털공간정보법」으로, 16개 각 주는 주법으로 제정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프랑스는 기존의 「통합환경법전」의 총칙 부분에 지리정보인프라 편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관련 사항을 규율한다. 독일의 경우, 공간정보에 대한 개념을 보다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하고 제도를 구축하고자 새로운 법을 제정한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 유럽지침의 본래적 목적과 내용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기존의 환경법전에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두 법제 모두 국토조사에 관한 기존의 제도와 법령(예: 지적법, 측량법 등)이 오래전부터 발전하여 왔기에 이러한 기존의 공간정보 취득 및 수집에 관한 법제와 그 인프라 구축에 관한 공간정보 법제 간에 연계 및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기본공간정보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측량법 등 기존의 법제에 포함시키고, 전문(주제별)공간정보의 경우 「디지털공간정보법」에 위치시키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각각의 전문공간정보는 기본공간정보와 관련되어야 하며(제4조제1항제4호),¹¹⁾ 이에 따른 공간정보는 전체 국가공간정보인프라체계의 기본데이터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제5조제2항). 즉, 「디지털공간정보법」은 기본공간정보와 전문공간정보의 체계를 구분하면서

11) 「디지털공간정보법」 제4조제1항제4호 : 공간정보는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테마와 관련되어야 한다. 좌표참조체계, 지형 격자 시스템, 지형 명칭, 행정 단위, 주소, 필지, 교통망, 해양망, 보호영역, 높이, 토지피복, 정서영법, 지질, 통계단위, 건물, 토지, 지목, 보건과 안전, 공익사업과 국가서비스, 환경감독, 제조업 시설물, 농업 시설물, 주민의 분포, 경영영역, 재난지역, 대기조건, 기상 지리적 특징, 해양 지리적 특징, 바다영역, 생물 지형적 영역, 서식지와 생활권, 종의 분포, 에너지 자원, 광물자원 등.

전문공간정보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조사·구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공간정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기본공간정보에 관한 목록과 적용범위는 「통합환경법전」을 기초로 하고 그 외의 공간정보에 관하여는 개별적인 규정들을 통하여 취득하도록 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개별적인 규정 중 대표적인 것은 기본공간정보의 구축을 담당하는 국립지리정보산립연구소(IGN)의 조직과 업무를 정하는 행정입법인 데크레(Décret) 제2011-1371호이다. 이 데크레에 의하면, 동 연구소는 국제시스템과 연계한 지리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기본공간정보와 전문공간정보의 구축 및 업데이트를 담당한다.¹²⁾

한편, 미국의 경우 대통령령(Executive Order) 제12906호는 데이터 표준에 관한 연방지리정보위원회(FGDC)와 그것을 구성하는 정부기관 등의 책임과 관련하여 국가공간정보기반(NSDI)의 실행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기본공간정보라 할 수 있는 데이터 표준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일반적 책임이 동 위원회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 정부기관 등으로 하여금 동 위원회에 의하여 개발된 데이터 표준에 따라 자신이 생산하는 데이터, 즉 전문공간정보가 호환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3.3. 시사점

어떠한 법이 타법과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입법형식을 채용하는 경우, 이 법은 일반법에 해당한다는 의미를 갖는다.¹³⁾ 이러한 의미에서 공간정보법 제4조는 개별 법령과의 관계에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공간정보법도 공간정보기반의 조성 및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활용에 있어서 개별 법령에 따른 공간정보의 수집 및 구축으로 인하여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별도의 규정(제29조)을 두고 있는 것이다.

공간정보법이 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위하여는 현재와 같이 분산적인 법체계 속에서 소극적인 검토사항만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수의 개별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조사에 포함된 공간정보의 속성을 구분하여 최소한 기본공간정보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법을 통하여 조사되고 구축될 수 있는 원칙규정을 두고, 개별 법령은 각자의 영역에서 이를 준용하면서 기본공간정보를 토대로 하여 전문공간정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러한 체계를 정립하는 방법으로는 독일과 같이 공간정보를 정하는 실체적인 법령에서 직접 기본공간정보와 전문공간정보의 유형을 정하는 방법과, 프랑스나 미국과 같이 전문공간정보와 관계되는 조직법 체계에서 그 개별

12) 이 데크레에 의하면, 국립지리정보산립연구소(IGN)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목록에 따라 전체 국토의 지리정보DB와 대축척지도(RGE) 제작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업데이트하며(제2조제3호), 산림부 장관이 정하는 목록의 산림의 자원과 환경에 관련된 DB, 대축척지도와 연계한 수종(樹種)에 대한 표지를 포함한 지리학적 좌표의 구축과 업데이트를 담당한다(동조제4호).

13) 국회법제실(2011), 「법제실무」, p.219.

조직의 업무 속에 이를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공간정보의 분류와 전체 체계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는 규정은 필요하다.

4. 공간정보 추진체계의 전문화

4.1. 현황

공간정보 추진체계란 국토이용의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구축하며, 구축된 정보를 관리 및 운영하는, 즉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는 ‘행위주체에 관한 체계적 계통’을 의미한다.¹⁴⁾ 일반적인 행정청의 행위가 단일한 행위로 종결되는 것과는 달리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등 일련의 행위는 다단계의 행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주체의 단계적 행위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를 수집 또는 조사하기 위한 사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적법한 행정주체에 의한 국토이용 현황의 조사가 이루어진 후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정보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별 행정주체는 구축된 공간정보를 행위의 목적에 맞게 분석, 가공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공간정보의 이러한 일련의 사이클은 단일한 행정주체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양한 행정주체에 의해 행

해진다. 이렇듯 공간정보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공간정보를 결정하거나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각 단계의 행위주체가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예정된 행위형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토의 조사부터 공간정보의 생산, 구축, 가공 등 각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을 간단히 살펴보면,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공간정보법 제5조), 각 개별법상 국토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기관(공간정보법에서는 이를 ‘관리기관’으로 정의한다)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공간정보법 제2조), 공간정보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지리정보원(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을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공간정보법 제3장), 공간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인 국가공간정보센터(공간정보법 제25조), 기타 민간기관들¹⁵⁾이 있다.

이 중에서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중추를 담당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위원

14) 따라서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인 공간정보법 상의 ‘공간정보체계’와 구별하여야 한다(박종택 등(2009), 『한국형 국가공간정보인프라 모델 정립 및 글로벌화 전략연구』, 국토연구원, p.133.)

15) 종래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공간정보의 조사·수집·생산·구축 등의 주된 주체로 파악하였지만, 공간정보법은 민간기관도 공간정보 구축 등 추진체계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로서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등을 들 수 있다(공간정보법 시행령 제2조). 민간기관이 자신의 업무영역에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 및 관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은 행정법상 공무원직 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들은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장),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 등 14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등 15인, 서울·부산 등 6개시 행정부시장과 경기도 행정부지사 등 7인, 민간전문가 8인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로서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총괄조정 분과위원회, 표준화·기술기준 분과위원회, 산업진흥분과위원회, 측량 및 수로조사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¹⁶⁾

공간정보 추진체계는 정책과 법의 집행의지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공간정보 추진체계가 공간정보의 체계적 발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들의 역할과 기능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4.2. 외국의 사례

공간정보 분야에 있어서 각종 표준 개발, 메타데이터의 제정 등 기존의 산재된 공간정보와 정보주체들 간의 협의 내지 조정을 담당하는 (주된) 행정주체를 특정하는 것은 제도 정착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공간정보제도에서 성공적 발전을 이룬 국가의 공통사항은 '추진체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일의 '지리정보기반위원회(GDI-DE)', 프랑스의 '지리정보위원회(CNIG)', 미국의 '연방지리정보위원회(FGDC)'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내용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본공간정보의 범위를 확정하고 조사 및 정보구

축을 담당하며, 기본계획(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공간정보를 담당하는 기관과의 공조를 추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¹⁷⁾

독일의 지리정보기반위원회(GDI-DE)는 연방대표로서 연방 내무부 장관과 경제·기술부 장관, 각 주 대표로서 각 주의 해당 소관청 장관으로 구성된다(주에 따라 공간 및 소비자 보호부 장관, 재정부 장관, 도시발전부 장관, 내무부 장관 등으로 다양하다).¹⁸⁾ 이 외에 연방 환경·자연보호·시설물 및 원자력안전부 장관, 건설·도시 및 공간조사부 장관 등 다수가 상임위원으로서 포함된다. 위원회 내의 사무국은 특히 연방과 각 주의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¹⁹⁾

프랑스의 국가지리정보위원회(CNIG)는 지속가능발전부에 소속된 위원회로서, 지리정보 분야에 있어서 관련 주체 간 업무조정 및 이들의 인터페이스를 개선하는 등 대한 정부정책을 구체화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사용자의 수요를 고려하며, 지리정보에 관한 모든 문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리정보 분야에 개입하는 각계의 대표, 즉 국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꼬뮌간 협력을 위한 공공시설법인, 지리정보에 관련된 기업 및 전문가, 민간협회, 국가계획에 참여하는 조합근로자, 업무와 관련 있는 자 등 총 3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장은 5년 임기로

16) 국토교통부(2014), "측량-지적 융합으로 '공간정보산업 도약' 토대 마련", 5월 26일자 보도자료, p.4.

17) 각 국의 공간정보 추진체계의 활동과정을 살펴보면, 1980~1990년대에는 공간정보의 개념을 인식하고 표준적인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공간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공간정보의 '표준'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들은 다시 공간정보의 수집 및 조사단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공간정보의 수집·조사·구축·활용 및 재수집·조사단계로 순환하는 사이클로 정착이 된 것이다.

18) <http://www.geoportal.de/DE/GDI-DE/Organisation/organisation.html?lang=de>.

19) 위원회의 조직은 미국 연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13개 주제별 소위원회와 각 위원회별 14개 작업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부처는 그 권한과 관련이 있는 일정한 소위원회, 워킹그룹, 기타 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다(김남철(2014), 「독일의 국토이용조사와 공간정보기반 구축 법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 pp.16-17.

현재 상원위원이 맡고 있다.²⁰⁾

미국의 경우, 1994년 대통령령 제12906호 및 OMB Circular A-16는 국가공간정보기반(NSDI)의 목표를 정하고, 연방지리정보위원회(FGDC)를 공간정보 개발의 독립적인 전담기구로 삼았다.²¹⁾ 대통령실(EOP) 대표 등으로 구성된 관계 부처합동 위원회와 장관, 독립연방기구 대표 등의 3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무부 내에 위원회의 사무국을 두어 전체적인 관리를 지원한다. 미국의 공간정보 거버넌스에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타리나로 인하여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절실하게 필요하였던 토지구획정보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였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연방정부가 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주 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이 정보생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운영모델이 요구되었던 것이다.²²⁾ 그리하여 다양한 비연방기구들이 공간정보의 관리, 정보 공유, 그리고 조정에 있어서 위원회(FGDC)를 통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요컨대, 연방, 주 및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대한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공간정보 커뮤니티’를 추진체로 하고 있는 점은 종래 민간부문을 공간정보의 피조사자 및 수요자로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3. 시사점

우리 공간정보법상 공간정보위원회의 조직은 각 부처의 차관급, 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이 공간정보의 정책과 제도 발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는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점은 각 국의 공간정보 추진체계가 공간정보정책의 결정과 적용, 확대에 있어서 해당 부처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담당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결정된 사항을 공간정보 관련 기관에게 확실하고 확고하게 관철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간정보 추진체계의 핵심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policy-level position)에 있는 자’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그것은 공간정보의 성격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통일적으로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간정보위원회 및 그 집행기구가 국토교통부 내에 조직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것이 비록 조직구성상 어쩔 수 없이 국토교통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타 부처 등에

20) http://cnig.gov.fr/?page_id=620.

21) <https://www.fgdc.gov/membership> FGDC의 조직은 2006년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이상으로 구성되었으나, 2010년 이후 장관급(Cabinet-level)으로 상향되었다. 이러한 구성원의 변경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위원회 자신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까지도 구속시킬 수 있도록 의도한 결과이기에 정책의 실효성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C. Johnson III (2006), "Designation of a Senior Agency Official for Geospatial Information", OMB Memorandum for Heads of Selected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및 V. Kundra, Federal Chief Information Officer(2010), "Geospatial Line of Business OMB Circular A-16 supplemental Guidanc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참조)

22) National Research Council(2007), "National Land Parcel Data: A Vision for the Future", Washington, DC.

서는 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즉, 공간정보법은 공간정보정책의 집행에 관하여는 대부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로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내에서는 “국토정보정책관”이 공간정보정책에 관하여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한다.²³⁾ 그리하여 국토정보정책관은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휘체계에 속하기 때문에 공간정보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간의 기능분담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국토정보정책관에 대한 지휘 감독체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공간정보위원회의 실질적 집행기구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여 급변하는 공간정보정책 및 공간정보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을 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5. 결론

공간정보라는 개념이 우리 법제 내에 포섭이 되었지만 아직은 그 정확한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공간정보의 개념과 법제, 추진체계에 관하여 외국의 제도를 참고하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공간정보법은 기본공간정보의 유형과 선정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만, 공간정보의 이·활용과 타법과의 관계설정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이 필요하다. 즉, 공간정보는 지형이나 경계 등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어느 누가 활용을 하더라도 그 정보에 신뢰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이 되는 기본공간정보와 그러한 기본공

간정보를 기초로 하여 필요한 속성과 정보를 추가로 덧입혀 특별한 목적이나 수요에 따라 활용하게 되는 전문공간정보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구별의 실익은 표준화된 기본공간정보는 비용 및 신뢰와 관계되기 때문에 가급적 어느 하나의 관리기관이 책임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다. 때문에 이러한 체계 정합성을 위하여 공간정보의 일반적 정의와 기본공간정보의 개별적 정의를 제2조와 제19조에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간정보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정의로서의 공간정보의 개념과 함께 그 유형으로서 기본공간정보와 전문공간정보를 구별하여 제시함으로써 정보의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간정보의 개념을 일반적 정의규정에 위치시키는 것은 공간정보법, 즉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하는 전제가 된다. 현재 공간정보법 제4조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개별 법령이 130건에 이르는 현실에 비추면 이 법이 과연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에 있는가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기본법”은 제도·정책의 전체상을 제시하고 그 종합화·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의 이념이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시책을 추진하거나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입법유형임에 비추어 볼 때,²⁴⁾ 타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기본법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수의 개별 법령에 포함되어 있

23) 국토교통부(2014), 「2014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p.10.

24) 그리하여 기본법에는 적어도 실현하여야 할 사항, 취하여야 할 입법적 조치, 달성하여야 할 목표 또는 행사되어야 할 수단에 관한 사항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 박영도(2014), 「입법학입문」, 법령정보관리원, pp.137-138.

는 기초조사에 포함된 공간정보의 속성을 구분하여 최소한 기본공간정보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통하여 조사되고 구축될 수 있는 원칙규정을 두고, 개별 법령은 각자의 영역에서 이를 준용하면서 기본공간정보를 토대로 하여 전문공간정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간정보의 개념과 그 성격에 따른 구별, 즉 기본공간정보와 전문공간정보의 체계는 추진체계(조직)와도 직접 연결이 된다. 기본공간정보의 경우 공신력을 담보로 하여야 표준화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공간정보 정책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policy-level position)에 있는 자’로 구성된 위원회로 하여금 기본공간정보의 수집과 표준화 및 호환성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어느 부처의 이해관계나 행정에 구속되지 않고 다양한 관리기관, 업체 기타 민간과 협업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국토정보정책관에 대한 지휘 감독체계를 분명히 하고 공간정보위원회에 실질적 집행기구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여 급변하는 공간정보정책 및 공간정보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을 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4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참고문헌】

- 국회 법제실(2011), 「법제실무」.

- 국토교통부(2013), 「2013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
- 국토교통부(2014), 「2014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 국토교통부(2014), “측량-지적 융합으로 ‘공간정보산업 도약’ 토대 마련”, 5월 26일자 보도자료.
- 김남철(2014), 「독일의 국토이용조사와 공간정보기반 구축 법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김현희 등(2014),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영도(2014), 「입법학입문」, 법령정보관리원.
- 박종택 등(2009), 「한국형 국가공간정보인프라 모델 정립 및 글로벌화 전략연구」, 국토연구원.
- 임형택(2014), 「공간정보 법제 개선 연구」, LXSIRI Report 제7호,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 정동훈 등(2013), 「국토공간 이용현황 정보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정보학회지 제21권 제5호, 한국공간정보학회.
- 조광제(2013), 「국토조사에 관한 법체계의 고찰」, 지적 제43권 제1호,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 최종권(2014), 「우리나라의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에 관한 법·제도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최진무(2014), 「Introduction to FGDC and Geospaital Data Management in the US」,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Johnson III, C.(2006), 「Designation of a Senior Agency Official for Geospatial Information」, OMB Memorandum for Heads of Selected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 Kundra, V.(2010), 「Geospatial Line of Business OMB Circular A-16 supplemental Guidanc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National Research Council(2007), 「National Land Parcel Data : A Vision for the Future」, Washington, DC.
- http://cnig.gouv.fr/?page_id=620
- <https://www.fgdc.gov/membership>
- <http://www.geoportal.de/DE/GDI-DE/Organisation/organisation.html?lang=de>